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서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-43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5. 5. .

발의자 : 서종수, 김윤정, 김효식,
문정애, 이학래, 유호렬,
(6명)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일부터 6개월로 한다.
- 다.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.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,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.

- 마포구의회에서는 마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음.
- 이에 사전·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, 마포구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정립과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」 제7조

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라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

관련 법규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4.11.29.] [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, 타법개정]

제57조(윤리특별위원회)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

[시행 2014.11.20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79호, 2014. 11. 20, 일부개정]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(개정 '09.2.5)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07.3.22)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09.10.01] [조례 제 757호, 2009.10.01, 일부개정]

제4조(윤리심사 등)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[시행 2007.11. 8] [서울특별시마포규칙 제486호, 2007.11. 8, 일부개정]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